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중소기업 개발지원 「초소형 개인정찰 무인기 시스템 개발」 사업 모집 공고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특화 개발연구소는 지역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방드론 특화기술 개발을 통한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으로 「초소형 개인정찰 무인기 시스템 개발」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방산특화 개발연구소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목적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중소기업 개발지원 사업”은 대전 소재 방산분야 드론기업의 국방 드론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일정 비율의 기업부담금을 부담한다.
- 방산특화 개발연구소는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연계하여 준다.

나. 추진방향

- 초소형 개인정찰 무인기 시스템 개발

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2024. 4. ~ 2026. 12. (33개월)

※ 전체 사업기간 일괄 협약 후, 규정에 따라 진도보고 및 중간평가 등 점검 실시

○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 대상 : 대전 소재(본사 또는 연구소) 중소기업, 컨소시엄 주관기업 1개사

* 대전소재 중소기업 3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 참여

○ (지원예산) 최대 69억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주관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수준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

※ 기업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할 것

(단위) 억원

계	정부/지자체	기업부담	연도별 배분		
			2024	2025	2026
92.0	69.0	23.0	42.0	25.0	25.0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2023.3.7.)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2023.8.24.)

○ 사업설명회

- 일자 : 2024년 3월 22일 14시

- 장소 : KAIST 기계공학동 중앙회의동 2층 해동정보실(26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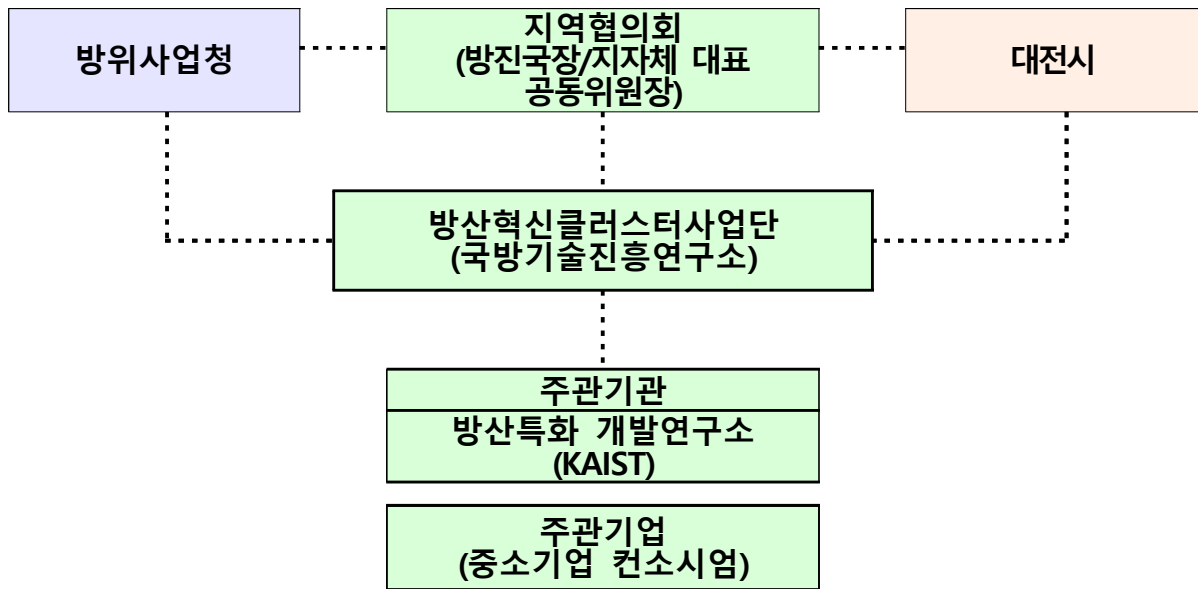
※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KAIST, CNU) 선행과제 연구개발 내용 공유

2 수행기업 역할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추진사업으로 중소기업개발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방산특화 개발연구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수행

가. 초소형 개인정찰 무인기 시스템 개발

- 초소형 무인기의 성능, 기능 및 운용성 확보를 통한 군 전력화 요구 초소형 성능을 보유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와 시스템 통합
- 추진체계



-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지역협의회	○ 주요 현안 심의·조정·의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	○ 사업계획 수립, 지도 및 조정·통제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KAIST)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사업수행 관리/감독
주관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	○ 초소형 개인정찰 무인기 시스템 개발 수행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한 : 2024년 4월 3일(수) 18시 마감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일정을 고려 공고기간을 21일로 한정

나.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대전지역에 본사(또는 연구소)를 둔 중소기업
 - 수행기업(주관-참여/협력)은 대전 소재 기업(본사 또는 연구소)으로 하며, 대전 소재 기업(주관기업 포함) 3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 필요
 - 대전지역 내에 소재한 국방 및 드론 전후방 분야 중소기업(드론분야 신규진입 희망기업 포함)
 - 대전지역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 지역 내 타 기업과의 컨소시엄(주관-참여/협력)을 구성하여 신청·운영 가능
- ※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은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이전 완료 필수

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원본 서류는 발표평가 시 제출)
- 접수처 : sonakiya@kaist.ac.kr
- 문의처 : 010-2512-2345
 - ※ 방산특화 개발연구소의 기술 연계 관련 내용은 사업관리담당(010-2512-2345)으로 문의

라. 신청서류

순	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주관기업	별첨 2-1 참조
2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별첨 2-2 참조
3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각 1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별첨 2-3 참조
4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업	별첨 2-4 참조
5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1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별첨 2-5 참조
6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7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공장등록증 면제시 기업부설연구소인가증 등 면제여부 확인 서류
8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9	가감점 증빙서류	각 1부	주관기업	-
10	특허기술 보유 증빙 자료 등	각 1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

※ 첨부 2의 서식을 사용하되, 사업신청서는 ‘별첨 2-1’을 준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바람

마. 신청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공고일 기준)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수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전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수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 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바. 추진일정

절 차	주 요 내 용	예 상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 모집 공고 - 국기연 한국과학기술원 대전테크 노파크 홈페이지 등	'24. 3월	한국과학기술원
↓			
신청접수	- 이메일접수	'24. 4월	신청기업 → 한국과학기술원
↓			
요건검토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 (자격기준 부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24. 4월	한국과학기술원
↓			
선정평가	- 서면평가(서류검토) - 현장점검 - 대면평가(신청기관 현장발표)	'24. 4월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 E-mail / 유선 통보	'24. 4월	한국과학기술원 → 신청기업
↓			
협약체결	- 협약체결	'24. 4월	한국과학기술원 → 선정기업

* 상기 일정은 접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선정평가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에 대한 자격여부 등 검토
- ② **(서면평가)** 요건검토 결과 적격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 평가 위원회 구성 : 객관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합참/군,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 (10인 예정)
- ③ **(현장점검)**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의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활용
- ④ **(대면평가)** 신청기업 사업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발표 불가 / 발표시간(총 50분 = 사업계획서 발표 25분 + 질의응답 25분)
 -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으로 선정하여 종합점수 산출
- ⑤ **(최종선정)**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후 지원대상 수행기업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나. 평가지표

○ (서면평가) 계획 충실성, 능력 및 여건, 자금 적정성, 목표달성 가능성

구 분		세 부 항 목	배 점
사업목적 부합성	개발목표/ 참여인력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과제 수행계획 수립여부 <input type="checkbox"/>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산정의 구체성,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25
개발성공 가능성	경영역량	<input type="checkbox"/> 기업 신용도 * AA- 이상(5), A+~A-(4), BBB+ ~ BBB-(3), BB+~B-(2), CCC+ 이하(1) <input type="checkbox"/> 기업 매출실적 (정부지원자금 제외한 매출규모) <input type="checkbox"/> 생산/품질 관련 조직 및 시스템에 대한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R&D 조직 및 보유 인력의 적절성	15
	기술역량	<input type="checkbox"/> 기반 기술 능력 * 유사 개발 경험, 기보유 기술 등 기술력 보유 여부 * 연구장비 및 인프라 등 필요 시설장비, 제조능력 보유 여부 * 정밀 부품 및 시스템 설계, 자체 제조 역량	30
		<input type="checkbox"/> 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개발 방안의 적절성 * 설계 계획 등 기술 확보 방안의 적절성 * 시제품 등 제작 계획 및 방안의 적절성 * 시험평가 등 개발 결과 검증 방안의 적절성	
사업관리 역량	<input type="checkbox"/> 개발일정 및 일정관리 계획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개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공동개발기업과의 업무분장 및 협조계획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연구인력의 보유수준(석, 박사급 연구인력 보유 규모)	20	
성과창출 가능성	개발결과 활용방안	<input type="checkbox"/> 개발 완료 후 실제 군 사용 등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개발 성과의 타분야 등으로의 확산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10
합 계			100

○ (대면평가) 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및 발전계획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기관 적합성 (40)	사업이해도 및 추진 의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과 방위산업육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사업추진 비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이해정도 ○ 기관 여건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관련 역량의 우수성
	추진역량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조직 및 운용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업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유사 사업 유치 경험 및 추진 현황
개발 계획의 타당성 (40)	개발역량 및 실현능력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업의 기획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 사업 목적 달성 전략 수립의 체계성 ○ 연구실 운영을 통한 방산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 기술연구와 제작능력을 통한 성과물 도출 가능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 ○ 집행계획 및 집행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기대 효과 및 발전 계획 (20)	발전가능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연구 및 시제 개발지원을 통한 방산분야 발전 방안 ○ 산·학·연 상생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성과 조기 가시화 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조기 가시화 가능성(조기 운영 여건 등)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방안 ○ 기타 제시 성과 및 달성방안

5 유의사항

-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사업관리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수행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수행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수행기업이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각 수행기업, 대표자,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는 산정 불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함
- 개발자금 산정 시, 연차별 회계정산을 위해 연차별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드시 매년 사업비 정산비용(회계감사비)을 반영해야 함

연구개발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공동개발 기관수
1억원 미만	98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개 : 가산금 없음 ○ 1개 : 수수료의 10% 가산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 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천원	
30억원 이상	2,043천원	

* 매년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맞게 산정

- 정부지원금은 지원사업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 지원금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과제수행과정 중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제출한 신청서류를 전문기관이 사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관계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및 운영지침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2023.3.7.)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3.8.24.)

○ 준용규정

-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628호, 2020.9.25.)